

지역고용 ☐ 계 획 ☐ 계획변경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	접수일자			처리기간 : 1일(계획변경 신고는 7일)									
사업장	①사업장관리번호														
	②명 칭						③대규모기업		[] 해당 [] 비해당						
	④소재지		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 담당자:)												
	⑤업종명		(주생산물:)												
	⑥업종코드								⑦피보험자수		명				
사업장 이전· 신설· 증설 계획	⑧이전 계획	이전 예정일		변경 전 소재지				변경 후 소재지							
		년 월 일													
	⑨신설 계획	사업장명													
		소재지													
		업종명						업종코드							
		시설·장비 설치현황						예상소요비용: 만원							
	⑩증설 계획	시설·장비 증설현황						예상소요비용: 만원							
지역근로자 고용계획		⑪조업시작 예정일		년 월 일				⑫고용예정인원		명					
⑬계획변경 사유															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[] 신고 [] 변경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공지사항

1.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2. 지역고용계획은 지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3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4조제6항제7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작성 방법

1. “①사업장관리번호”란에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2. “⑤업종명”란 및 “⑥업종코드”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(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른 고시)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(세세분류)를 따릅니다.
3. “⑬계획변경사유”란은 계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